좋은원전!

2019. 5. 13.~ 5. 17.
평생학습원

2019. 행정(지도)감사 결과

【 평 생 학 습 원 】

청렴韓세상

기획감사실

- 목 차 -

Ⅰ. 감사개요 및 결과

Ⅱ.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Ⅲ. 감사 처분요구서

Ⅰ. 감사개요 및 결과

감 사 개 요

○ 감사대상기관 : 평생학습원
○ 감 사 구 분 : 행정(지도)감사
○ 감 사 기 간 : 2019. 5. 13. ~ 5. 17.(5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16. 6. ~ 2019. 4.
○ 감 사 대 상 : 행정업무전반
 · 군정 주요시책, 민원, 공사추진 실태
 · 예산·회계, 세입·세출, 물품, 서무, 보안 등 업무처리 실태

감 사 결 과

□ 총지적건수 : 15

※ 교육지원팀 7, 청소년팀 5, 도서관운영팀 3

○ 행정상 조치 : 15건 (시정 2, 개선1, 주의 12)

Ⅱ. 처분계획

행정상 조치

번호	담당부서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1	교육지원팀	주의	공사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2		주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소홀
3		주의	지출결의서 법정서식 사용 준수 소홀
4		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5		주의	회계관직공무원 부재중 직무대리 지정 소홀
6		시정	물품관리 소홀
7		주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8	청소년팀	시정	청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관리 소홀
9		주의	건축 감리완료보고서 검토 소홀
10		주의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11		주의	시설공사 공사감독자 선정 부적정
12		주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소홀

번호	담당부서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13	도서관운영팀	개선	옥천 군민도서관 전자책(e-book) 대출관리 소홀
14		주의	성범죄자 경력자 일제점검 소홀
15		주의	부속시설 사용료 세입조치 소홀

Ⅲ. 감사 처분요구서

【 No 1】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공사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현 황 〕

공사명	하 자 검 사						
	정기검사일						최 종 검사일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합계		2건	1건	2건	1건	1건	3건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하수관거연결공사	06.24.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청사 내부 도색공사	06.24.	미실시					미실시
청산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공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이원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각종 공사가 완료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최종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평생학습원에서는 공사 준공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2016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2건), 2017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1건), 2017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2건),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1건), 2018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1건), 최종 하자검사(3건)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정기·최종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2】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소홀
〔 현 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설계금액(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평생학습원 옥상 방수공사	12,000	2018.10.31	2018.11.13	2018.11.29	**페인트 * *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고,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평생학습원에서는 평생학습원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계약수량의 산출근거가 명시된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 없이 상기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3】 감사자 조진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지출결의서 법정서식 사용 준수 소홀
〔 현 황 〕

(단위 : 원)

연번	내 역	지출결의서	지출일자	금 액	비고
계	6건				
1	2017년 추석 명절맞이 직원 격려물품 구입	(일반)지출결의서	2017.09.26.	483,000	영수증
2	청소년수련관「드론아 놀자!꿈을 향한 비상!」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일반)지출결의서	2018.07.11.	838,000	세금 계산서
3	청소년수련관 여름방학 특강 「코딩과 로봇」 운영 물품구입	(일반)지출결의서	2018.07.31.	1,035,000	세금 계산서
4	청소년수련관 여름방학 특강 「만들go 꾸미go 즐기go 목공DIY 체험활동」 운영 물품구입	(일반)지출결의서	2018.07.31.	795,000	세금 계산서
5	명사학습콘서트 식전행사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일반)지출결의서	2018.07.31.	900,000	세금 계산서
6	「나만의 EM친환경 생활제품 만들기」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일반)지출결의서	2018.07.31.	660,000	세금 계산서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제124조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또는 별지 제49호 서식((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평생학습원에서는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미사용함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5호 서식(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5】 감사자 조진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현 황 〕

(단위 : 원)

내역	세목	지출일	지출금액	비고
2017년 추석 명절맞이 직원 격려물품 구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7.09.26	483,00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평생학습원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직원들을 단순히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물품 구입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5】 감사자 조진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회계관직공무원 부재중 직무대리 지정 소홀

〔 현 황 〕

직급	성명	구분	기간	일수	대리지정 여부	건수(건) / 금액(원)		비고
계						206	353,933,220	
재무관	***	교육	20**. 0*.06~0*.08	3	부	17	17,954,790	
		교육	20**. 1*.15~1*.17	3	부	21	7,980,180	
	***	교육	20**. 0*.09~0*.13	5	부	40	62,853,790	
		특별휴가	20**. 0*.11~0*.15	5	부	40	128,548,260	
		교육	20**. 0*.11~0*.12	2	부	32	54,769,570	
지출원	***	병가	20**. 0*.01~0*.04	4	부	23	45,851,110	
		교육	20**. 0*.07~0*.11	5	부	32	35,367,540	
		교육	20**. 0*.06~0*.07	2	부	1	607,980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4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지정대리)에 의하면 규정에 의해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토록 하고 있고,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평생학습원에서는 회계관직을 갖고 있는 원장 및 교육지원팀장이 교육, 연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한 후 예산을 집행(자금승인 및 지급명령)하여야 함에도, 재무관, 지출원의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없이 예산의 지급명령을 발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6】 감사자 조진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물품관리 소홀
〔 현 황 〕

(단위 : 개, 원)

연번	물품명	취득일자	취득수량	취득액	부적정 내구연한	적정 내구연한
	계		77	22,785,390		
1	접이식의자	2019.02.27.	6	378,000	0년	8년
2	라운지용의자	2018.12.21.	12	4,728,000	0년	8년
3	수강용탁자	2018.12.03.	38	11,932,000	0년	7년
4	접이식의자	2018.01.30.	20	2,150,000	0년	8년
5	3차원프린터	2016.02.03.	1	3,597,390	0년	7년

※ 내구연한: 조달청고시 제2018-14호(2018.10.05.시행) 참고

【위법부당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0조(재물조사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 동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평생학습원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무과에서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계획 알림[재무과-23689호(2018.07.23.)]'에 따라 실과소·읍면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재물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평생학습원에서는 접이식의자 외 4종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 등록 시 정확히 등록하여야 하는 내구연한을 '0년'으로 입력하여 물품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물품의 내구연한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7】 감사자 박지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 현 황 〕

연번	근무일자	당직근무자	작성여부	비고
1	2018.02.13	민**	부	
2	2018.02.15	민**	부	
3	2018.06.07	유**	부	
4	2018.07.06	유**	부	
5	2018.07.13	김**	부	
6	2018.09.15	박**	부	
7	2018.09.19	이**	부	
8	2018.09.21	이**	부	
9	2018.12.17	서**	부	
10	2018.12.28	김**	부	
11	2018.12.29	반**	부	
12	2019.04.19	이**	부	
13	2019.04.25	이**	부	
14	2019.04.28	이**	부	

【위법부당내용】

○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자치행정과장에게 야간사건·사고 발생 상황,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19조(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에 의하면 사업소와 읍·면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을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평생학습원에서는 당직근무를 종료하고 당직근무일지 작성 및 상황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8년 2월 13일 외 13일에 대한 당직근무일지 작성 및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8】 감사자 조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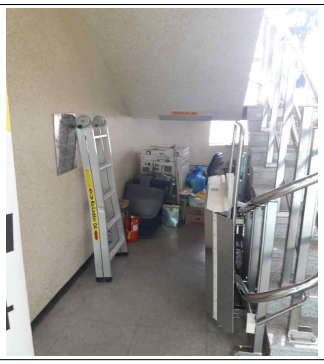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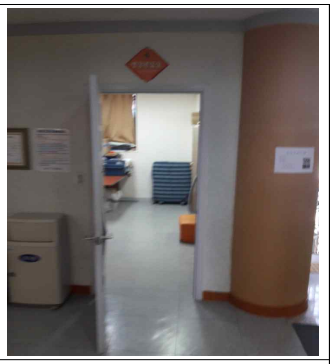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청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관리 소홀
〔 현 황 〕

<table>
<tr>
<td colspan="2"> </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쇼파 등 폐기물</td>
<td>노후 복사기</td>
<td>영상편집실</td>
</tr>
</table>

【위법부당내용】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평생학습원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이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산 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근무자를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일 현재(2019.5.13.) 시설물 및 환경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 청산 청소년 문화의집 현관에 쇼파 등 폐기물이 방치된 채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건물 내 계단 하단에는 노후 복사기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영상편집실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등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청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9】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건축 감리완료보고서 검토 소홀
〔 현 황 〕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확충)공사 건축감리용역	22,303	2017.5.4	2017.5.10	2018.11.12	****사무소 * *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에 의하면 용역 완성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3.2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건축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사감리 일지, 공사추진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등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평생학습원에서는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확충)공사 건축감리용역 완료서를 접수하면서 감리와 관련된 감리보고서,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등을 제출 받지 않았고, 시정조치 없이 감리용역을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0 】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 현 황 〕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확충) 공사(전기)	185,460	2017.5.12	2017.5.18	2018.11.19	㈜****공사 * * *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평생학습원에서는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확충) 공사(전기)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수불부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1】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시설공사 공사감독자 선정 부적정

〔 현 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공사감독
청소년수련관 상수도 배관교체 및 소화전 이전공사	7,200	2018.3.9	2018.3.15	2018.3.27	㈜**건설 * * *	공무직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오수관로 공사	9,000	2018.11.29	2018.12.4	2018.12.17	㈜**건설 * * *	공무직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 평생학습원에서는 2018.3.9. 계약 체결한 청소년수련관 상수도 배관교체 및 소화전 이전공사 외 1건에 대하여 해당공사의 특성을 감안,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공종에 부합된 해당직렬을 공사감독으로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지 않아 공사 품질관리 등 건설공사가 설계대로 원활히 진행되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업무 수행 등 시설공사 최적의 계약목적물 달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2 】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소홀

〔 현 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청소년수련관 본관 및 실내체육관 도장공사	10,800	2019.4.1	2019.4.3	2019.4.20	**페인트 * * *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고,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평생학습원에서는 청소련수련관 본관 및 실내체육관 도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계약수량의 산출근거가 명시된 수량산출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없이 수의계약 당사자인 1개 업체의 견적서만을 기준하여 상기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3 】 감사자 조도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옥천 군민도서관 전자책(e-book) 대출관리 소홀
〔 현 황 〕

○ 전자책 이용현황

연도	신규회원 가입수	접속 자수	대출현황(권)				이용율 (C=A/B)
			계(A)	사이트	스마트폰	태블릿PC	
2014	53	1,404	1,207	379	638	190	23.7
2015	100	1,272	1,300	782	238	280	24.5
2016	70	889	1,252	308	706	238	21.9
2017	86	736	944	274	506	164	15.7
2018	291	1,129	1,609	379	931	299	25
2019.5	129	499	644	127	387	130	9.7

○ 전자책 자료현황

연도	누계(B)	자료 보유 현황(권)			비고
		계	구입	기증	
2013	4,785	4,785	871	3914	
2014	5,049	264	264		
2015	5,250	201	201		
2016	5,668	418	418		
2017	5,961	293	293		
2018	6,390	429	429		
2019	6,589	199	199		

【위법부당내용】

○ 도서관법 제27조 및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옥천 군민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에 따라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이에, 평생학습원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로 자료를 구입하거나 기증 등의 방법으로 도서관 자료를 확충하고 있음

- 그러나, 군민도서관에 확보된 전자책에 대한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매년 자료를 확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20%대에 머물고 있어 저조한 실정이며

- 전자책(e-book)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자도서관 가입자 수 확보, 접근방법, 도서관 확충자료에 대한 주민홍보 등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전자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전자책 홍보, 접근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4 】 감사자 조도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성범죄자 경력자 일제점검 소홀
〔 현 황 〕

연도	점검내역						
	군민 도서관	작은도서관					
		꿈이있는	배바우	안남	청성	청산	이원
설립일	2011.10.7	2018.5.18	2008.5.29	2018.5.11	2014.7.1	2011.11.4	2013.11.2
2016	x	미해당	x	미해당	x	미해당	x
2017	x	미해당	x	미해당	x	미해당	x
2018	o	x	x	x	x	미해당	o
2019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미해당	예정

※ 실시여부(O, X), 청산(학교 운영)

【위법부당내용】

○ 도서관법 제2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공립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및 제57조에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 평생학습원에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성범죄자 경력자 일제점검을 2016, 2017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 2018년부터 공립도서관인 옥천 군민도서관, 이원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작은도서관 등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5 】 감사자 박지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년 평생학습원 행정(지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기 관 명〕 평생학습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부속시설 사용료 세입조치 소홀

〔 현 황 〕

(단위 : 원)

발생일자	세입과목	금액	정당 납입일자	실제 납입일자	납입 지연일수	비고
계	5건	27,700				
2017.5.13	사용료수입	6,070	2017.5.15	2017.5.22	7	
2017.5.14	사용료수입	5,530	2017.5.15	2017.5.22	7	
2017.5.16	사용료수입	3,920	2017.5.17	2017.5.22	5	
2018.2.21	사용료수입	2,630	2018.2.22	2018.2.26	4	
2018.4.20	사용료수입	9,550	2018.4.23	2018.4.26	3	

【위법부당내용】

○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규정에 따라 독서 증진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되,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규정을 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서는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금을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 수입금이 수납된 경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46호(2018.07.30.)]」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여 세입 금액의 성질에 따라 세입예산의 과목을 장·관·항·목별로 세부 분류하여 수입금이 수납된 그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 평생학습원에서는 2017년 5월 13일자 부속시설 복사기/프린터기 사용 수입 6,070원 외 4건(27,700원)의 수입금에 대하여 정당 납일일자보다 최대 7일을 지연 납입하는 등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 수입금에 대한 세입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평생학습원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